

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의영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3년 5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계획수립 규정을 신설하고, 지역전통주 육성지원사업 내용, 홍보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,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가.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계획 수립(안 제4조)

나. 사업지원(안 제5조)

다. 공식행사에서의 지역전통주 이용 활성화(안 제6조)

라. 지역 우수전통주 선정 및 홍보(안 제7조)

마. 포상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)

가. 제안배경

- 현행 조례(2021년 7월 9일 시행)는 지역전통주 산업육성과 건전하고 품위있는 술 문화 정착으로 지역전통주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2015년 2월 17일 제정됨
- 다만, 현행 조례는 전통주와 지역전통주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, 지역전통주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규정이 없어 지역전통주 육성지원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며,
-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제한 조례로 선정하고, 개선을 요구한 바 있음
- 따라서 관련 제도 개선 및 공정거래위원회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제안됨

나.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

-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본칙 8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
- 안 제5조는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계획(이하 “육성계획”이라 한다)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육성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포함사항으로 기본방향, 품질향상, 전문인력 양성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
- 안 제6조는 공식행사에서의 지역전통주 이용에 관한 것으로,
 - 조의 제목을 지역전통주 우선 이용에서 지역전통주 이용 활성화로 변경하고, 도가 주최·주관하는 각종 행사 뿐만 아니라, 시·군, 도가 설립한 공사·공단, 도 출연기관에 대해서 지역전통주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함

- 또한,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‘우선’을 삭제하여 사업자 차별 등 경쟁제한 및 소비자 이익 저해 등 규제사항을 개선함
- 안 제7조는 지역 우수전통주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 우수전통주 홍보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, 선정된 지역 우수전통주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신설함
- 안 제8조는 지역전통주 산업육성과 소비촉진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그 밖에 전통주와 지역전통주의 혼용 사용을 바로잡고,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함

다. 종합의견

- (필요성) 이 조례안은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전통주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고,
- (타당성) 이를 위해 육성계획 수립, 공식행사 이용 활성화, 지역 우수전통주 홍보와 포상 등의 규정을 신설한 것은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그 내용이 타당함
- (법적합성) 이 조례안에서 명시되고 있는 조항들은 관련 법령¹⁰⁾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
10)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(시행 2022. 1. 1.)